

의안번호	2217804
의 퇴 인	전용기의원
회 답 일	2026.7.9.
추 계 번호	26D159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심신장애 판정 시 등급과 보상금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97억 8,300만원, 2031년 548억 4,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582억 200만원(연평균 516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산업재해보상보험 등급과 기준 준용 (안 제33조제1항)	49,783	50,290	50,907	52,376	54,846	258,202	51,640

주: 1. 산업재해보상보험 등급과 기준 준용(안 제33조제1항)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는 최근 3년(2023~2025년) 현행법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별 지급인원(국방부 자료)과 2024년 산업재해 장애등급별 인원 등(고용노동부 자료)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3조제1항 (장애보상금)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서관 등에 적용하는 장애보상금제도의 심신장애 판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애등급 기준을 준용하고,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애등급별 장애보상일시금 보상 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3조제1항(장애보상금)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장애보상금 재정소요와 개정안에 따른 장애보상금 재정소요를 각각 추계한 후 차액을 산출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
- 특수직무공상, 그 밖에 심신장애에 한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¹⁾

[표 2]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구 분	현행법	개정안
전상	그 밖의 심신장애에 따른 등급별 금액의 2.5배	배율은 동일하나 기준이 되는 ‘그 밖의 심신장애에 따른 등급별 금액’ 금액 상승으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 장애등급별 일수
특수직무공상	그 밖의 심신장애에 따른 등급별 금액의 1.88배	
그 밖의 심신장애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제2급: " 6배 제3급: " 4.5배 제4급: " 3배	제1급 1,474
		제2급 1,309
		제3급 1,155
		제4급 1,012
		제5급 869
		제6급 737
		제7급 616
		제8급 495
		제9급 385
		제10급 297
		제11급 220
		제12급 154
		제13급 99
		제14급 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최근 3년(2023~2025년) 지급실적이 없는 전상의 경우 향후 발생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 본 추계에서는 국방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군인재해보상제도의 장애등급과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이 대응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가재정소요 추계

[표 3] 현행법 기준 장애등급과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현행법 장애등급	산재보험 장해등급	비고
제1급	제1급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산정방식의 변화로 단가가 상승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2급	제7급	
제3급	제8급	
제4급	제9급	
	제10급	
—	제11급	개정안에 따라 심신장애판정 범위가 확대되어 지급대상자 수의 증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제12급	
	제13급	
	제14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특수직무공상, 그 밖의 심신장애에 대한 등급과 보상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용하여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본 추계에서는 현행법에 근거한 지급대상자 수와 1인당 보상금, 개정안에 따른 지급대상자 수와 1인당 보상금을 곱하여 현행법과 개정안의 재정소요를 산출한 후 차액을 계산

가. 현행법에 따른 재정소요

□ (지급대상자 수) 특수직무공상은 연간 8명으로 가정하고, 그 밖의 심신장애는 2027년 312명, 2031년 311명으로 추정

- 특수직무공상은 국방부에서 제공한 최근 3년(2023~2025년) 연평균 지급대상자 수 8명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특수직무공상 지급대상자 수는 현행법 기준 장애등급별로 제1급 1명, 제2급 2명, 제3급 3명, 제4급 2명으로 총 8명
- 그 밖의 심신장애의 경우, 추계기간 동안 병 인원을 추정한 후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의 장애등급별 발생율을 곱하여 산출
 - 병 인원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20~24세 남성인구 대비 병(상근예비역 포함) 인원 평균 비율 20.0%²⁾에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결과의 20~24세 남성 인구수를 곱하여 추정

[표 4] 병 인원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24세 남성 인구(a)	1,268,442	1,263,926	1,243,827	1,240,140	1,259,763
병 인원(=a×20.0%)	253,688	252,785	248,765	248,028	251,95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의 장애등급별 발생율은 제1급 0.013%, 제2급 0.009%, 제3급 0.023%, 제4급 0.078%이고 [표 4]의 병 인원 에 적용하여 장애등급별 지급대상자 수 산출

2) 20~24세 남성인구 대비 병 인원 비율(단위: 천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20~24세 남성 인구	1,711.4	1,620.5	1,548.4	1,486.4	1,390.5	1,551.4
병	358.3	321.1	296.1	292.8	279.6	309.6
비율	20.1	19.8	19.1	19.7	20.1	20.0

주: 국방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현행법에 따른 장애등급별 지급대상자 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특수 직무공상	제1급	1	1	1	1	1
	제2급	2	2	2	2	2
	제3급	3	3	3	3	3
	제4급	2	2	2	2	2
	소계	8	8	8	8	8
그 밖의 심신장애	제1급	33	33	32	32	33
	제2급	23	23	22	22	23
	제3급	58	58	57	57	58
	제4급	198	197	194	193	197
	소계	312	311	305	304	3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인당 보상금) 추계기간 동안의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추정한 후 현행법 기준 장애등급별 배율을 곱하여 산출

- 특수직무공상, 그 밖의 심신장애의 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에 장애등급별 배율([표 2] 참고) 적용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26년 기준 595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최근 3년(2024~2026년) 평균 공무원 보수 상승률 3%에 따라 상승

[표 6]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추정: 2027~2031년

(단위: 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613	631	650	670	6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7] 현행법에 따른 장애등급별 1인당 보상금 추정: 2027~2031년

(단위: 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		613	631	650	670	690
그 밖의 심신장애	제1급(b=a×9배)	5,517	5,679	5,850	6,030	6,210
	제2급(c=a×6배)	3,678	3,786	3,900	4,020	4,140
	제3급(d=a×4.5배)	2,759	2,840	2,925	3,015	3,105
	제4급(e=a×3배)	1,839	1,893	1,950	2,010	2,070
특수 직무공상	제1급(=b×1.88배)	10,372	10,677	10,998	11,336	11,675
	제2급(=c×1.88배)	6,915	7,118	7,332	7,558	7,783
	제3급(=d×1.88배)	5,186	5,338	5,499	5,668	5,837
	제4급(=e×1.88배)	3,457	3,559	3,666	3,779	3,89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법에 따른 재정소요) 2027년 83억 7,500만원, 2031년 94억 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현행법에 따른 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지급 대상자 수 (a, 명)	특수 직무공상	제1급	1	1	1	1	1
		제2급	2	2	2	2	2
		제3급	3	3	3	3	3
		제4급	2	2	2	2	2
		소계	8	8	8	8	8
	그 밖의 심신장애	제1급	33	33	32	32	33
		제2급	23	23	22	22	23
		제3급	58	58	57	57	58
		제4급	198	197	194	193	197
		소계	312	311	305	304	311
1인당 보상금 (b, 만원)	특수 직무공상	제1급	10,372	10,677	10,998	11,336	11,675
		제2급	6,915	7,118	7,332	7,558	7,783
		제3급	5,186	5,338	5,499	5,668	5,837
		제4급	3,457	3,559	3,666	3,779	3,892
	그 밖의 심신장애	제1급	5,517	5,679	5,850	6,030	6,210
		제2급	3,678	3,786	3,900	4,020	4,140
		제3급	2,759	2,840	2,925	3,015	3,105
		제4급	1,839	1,893	1,950	2,010	2,070
재정소요 (=a×b, 백만원)	특수 직무공상	제1급	104	107	110	113	117
		제2급	138	142	147	151	156
		제3급	156	160	165	170	175
		제4급	69	71	73	76	78
	그 밖의 심신장애	제1급	1,821	1,874	1,872	1,930	2,049
		제2급	846	871	858	884	952
		제3급	1,600	1,647	1,667	1,719	1,801
		제4급	3,641	3,729	3,783	3,879	4,078
	합계		8,375	8,601	8,675	8,922	9,4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 (지급대상자 수) 특수직무공상은 연간 8명으로 가정하고, 그 밖의 심신 장애는 2027년 1,589명, 2031년 1,575명으로 추정

- 특수직무공상은 국방부에서 제공한 최근 3년(2023~2025년) 연평균 지급 대상자 수 8명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발생하고, 국방부 자료에 근거하여 산재보험의 장애등급에 대응하면, 제1급 1명, 제7급 2명, 제8급 3명, 제9급 2명으로 가정
- 그 밖의 심신장애의 경우, 추계기간 동안의 병 인원(표 4)에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현황분석’의 장애등급별 발생율과 국방부의 최근 3년(2023~2025년) 장애등급별 발생율을 활용하여 산출
 - 현행법 기준 군인의 제1급부터 제4급까지 장애 발생률이 0.123%이고 이에 대응하는 산재보험의 장애 발생율은 0.048%로 추정되어 2024년 기준 산재보험 장애 등급별 발생비율에 2.56배율($=0.123\% \div 0.048\%$)을 적용

[표 9] 현행법 기준 장애등급과 산재보험의 장애등급

현행법 장애등급	산재보험 장애등급(a)	배율(b)	개정안 장애등급별 발생비율(=a×b)
제1급	제1급	2.56	제1급
	제2급		제2급
	제3급		제3급
	제4급		제4급
	제5급		제5급
	제6급		제6급
제2급	제7급		제7급
제3급	제8급		제8급
제4급	제9급		제9급
	제10급		제10급
합계	합계		제11급
—	제11급		제12급
	제12급		제13급
	제13급		제14급
	제14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10] 개정안에 따른 장애등급별 지급대상자 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특수 직무공상	제1급	1	1	1	1	1
	제7급	2	2	2	2	2
	제8급	3	3	3	3	3
	제9급	2	2	2	2	2
	소계	8	8	8	8	8
그 밖의 심신장애	제1급	7	6	6	6	6
	제2급	0	0	0	0	0
	제3급	7	6	6	6	6
	제4급	0	0	0	0	0
	제5급	7	6	6	6	6
	제6급	26	26	25	25	26
	제7급	26	26	25	25	26
	제8급	59	58	57	57	58
	제9급	52	52	51	51	52
	제10급	130	130	127	127	129
	제11급	202	201	198	197	200
	제12급	208	207	204	203	207
	제13급	85	84	83	83	84
	제14급	780	777	765	763	775
	소계	1,589	1,579	1,553	1,549	1,5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인당 보상금) 추계기간 동안의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추정한 후 산재보험제도의 장애등급별 보상 일수를 곱하여 산출

- 특수직무공상, 그 밖의 심신장애의 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에 장애등급별 배율([표 2]참고) 적용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26년 기준 595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최근 3년(2024~2026년) 평균 공무원 보수 상승률 3%에 따라 상승

[표 11]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추정: 2027~2031년

(단위: 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613	631	650	670	6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12] 개정안에 따른 장애등급별 1인당 보상금 추정: 2027~2031년

(단위: 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		613	631	650	670	690
그 밖의 심신장애	제1급($b=a \div 30 \text{일} \times 1,474 \text{일}$)	30,119	31,003	31,937	32,919	33,902
	제2급($c=a \div 30 \text{일} \times 1,309 \text{일}$)	26,747	27,533	28,362	29,234	30,107
	제3급($d=a \div 30 \text{일} \times 1,155 \text{일}$)	23,601	24,294	25,025	25,795	26,565
	제4급($e=a \div 30 \text{일} \times 1,012 \text{일}$)	20,679	21,286	21,927	22,601	23,276
	제5급($f=a \div 30 \text{일} \times 869 \text{일}$)	17,757	18,278	18,828	19,408	19,987
	제6급($g=a \div 30 \text{일} \times 737 \text{일}$)	15,059	15,502	15,968	16,460	16,951
	제7급($h=a \div 30 \text{일} \times 616 \text{일}$)	12,587	12,957	13,347	13,757	14,168
	제8급($i=a \div 30 \text{일} \times 495 \text{일}$)	10,115	10,412	10,725	11,055	11,385
	제9급($j=a \div 30 \text{일} \times 385 \text{일}$)	7,867	8,098	8,342	8,598	8,855
	제10급($k=a \div 30 \text{일} \times 297 \text{일}$)	6,069	6,247	6,435	6,633	6,831
	제11급($l=a \div 30 \text{일} \times 220 \text{일}$)	4,495	4,627	4,767	4,913	5,060
	제12급($m=a \div 30 \text{일} \times 154 \text{일}$)	3,147	3,239	3,337	3,439	3,542
	제13급($n=a \div 30 \text{일} \times 99 \text{일}$)	2,023	2,082	2,145	2,211	2,277
	제14급($o=a \div 30 \text{일} \times 55 \text{일}$)	1,124	1,157	1,192	1,228	1,265
특수 직무공상	제1급($=b \times 1.88 \text{배}$)	56,624	58,286	60,042	61,888	63,736
	제7급($=h \times 1.88 \text{배}$)	23,664	24,359	25,092	25,863	26,636
	제8급($=i \times 1.88 \text{배}$)	19,016	19,575	20,163	20,783	21,404
	제9급($=j \times 1.88 \text{배}$)	14,790	15,224	15,683	16,164	16,6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2027년 581억 5,800만원, 2031년 642억 5,200만원으로 추계됨

- [표 10]의 지급대상자 수와 [표 12]의 1인당 보상금을 구분과 장애등급에 따라 곱하여 산출

[표 13]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재정소요	특수 직무공상	제1급	566	583	600	619	637
		제7급	473	487	502	517	533
		제8급	570	587	605	623	642
		제9급	296	304	314	323	333
	그 밖의 심신장애	제1급	2,108	1,860	1,916	1,975	2,034
		제2급	0	0	0	0	0
		제3급	1,652	1,458	1,502	1,548	1,594
		제4급	0	0	0	0	0
		제5급	1,243	1,097	1,130	1,164	1,199
		제6급	3,915	4,031	3,992	4,115	4,407
		제7급	3,273	3,369	3,337	3,439	3,684
		제8급	5,968	6,039	6,113	6,301	6,603
		제9급	4,091	4,211	4,254	4,385	4,605
		제10급	7,890	8,121	8,172	8,424	8,812
		제11급	9,080	9,300	9,439	9,679	10,120
		제12급	6,546	6,705	6,807	6,981	7,332
		제13급	1,720	1,749	1,780	1,835	1,913
		제14급	8,767	8,990	9,119	9,370	9,804
	합계		58,158	58,891	59,582	61,298	64,2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97억 8,300만원, 2031년 548억 4,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582억 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현행법(a)	8,375	8,601	8,675	8,922	9,406	43,979
개정안(b)	58,158	58,891	59,582	61,298	64,252	302,181
추가재정소요(=b-a)	49,783	50,290	50,907	52,376	54,846	258,20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최근 3년(2023~2025년) 현행법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별 지급인원(국방부 자료)과 2024년 산업재해 장해등급별 인원 등(고용노동부 자료)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